

의안번호	2214147
의 퇴 인	남인순의원
회 답 일	2025.11.17.
추계번호	25C6072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조의3 (비대면진료 중개)	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제공하는 기능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(제4항)	의무규정
2	안 제34조의5 (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)	-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인 간 비대면진료 요청 및 실시,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전달, 비대면진료 및 비대면진료 처방의 조제 시 활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이력 등의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(이하 “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”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함(제1항) -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- 그 밖에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4조의3 (비대면진료 중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4조의5 (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)	

2. 상세 사유

□ 비대면진료 중개(안 제34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(애플리케이션 포함)의 기능의 적정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인증할 경우, 신규 인증 지침 마련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를 가정하기 어려움
 - －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“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”을 작성 및 배포하였는데,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

□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(안 제34조의5)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한 공공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명문화에 따른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를 가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미 “비대면 진료기술개발(R&D)” 사업(2025년 기준 74억원), “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” 사업(2025년 기준 45억원)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진료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
 - － “비대면 진료기술개발(R&D) 사업은 5개년(2023~2027년) 연속사업으로,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개발 및 시스템 개발,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
 - － 개정안은 구체적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가정하기 어려움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